

성과평가기준 개정(안)

1 개정 사유

- 성과관리 및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여, 조직의 전략실행력 및 개인의 성과창출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반 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

2 주요 개정내용

1 성과평가단 운영개선

- 성과평가단 내 자문위원 운용 규모 및 위촉 범위를 확대하고, 평가과정에서의 수행 역할을 명확화
- 개정 내용

구분	현행	개정(안)
제7조 평가단 구성	②성과평가단은 4급 이상 내부직원과 성과평가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2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,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평가단에서 제외한다.	②성과평가단은 4급 이상의 내부직원 으로 구성하되,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평가단에서 제외한다.
제8조 평가단 운영방법	-- 신 설 --	③성과평가단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2 비계량지표 평가기준 세분화

- 비계량지표(계량지표 일부) 평가방법을 5등급 평가에서 9등급 평가로 개선하여 평가의 정교성 강화
- 개정 내용

구분	현행	개정(안)
제14조 비계량지표 평가방법	①비계량지표의 평가방법은 5등급 평가에 의하며, 절대평가한다. ②제 1항의 세부 평가방법 및 그에 따른 평가점수의 조정은 “별표 2”와 같다.	①비계량지표의 평가방법은 9등급 평가에 의하며, 절대평가한다. ②제 1항의 세부 평가방법은 “별표 2”와 같다.

③ 개인성과평가 운영 합리화

- 평가 세부사항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, 인사이동에 따른 평가점수 안분방식 개선하여 평가의 정밀성 강화
- 개정 내용

구분	현행	개정(안)
제21조 개인성과 평가대상	①일반직, 업무직, 전문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. 단, 평가대상기간 중 신규 입사자, 장기연수 및 휴직 등으로 근무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	①일반직, 업무직, 전문직을 평가대상으로 하며, 세부 평가대상은 당해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서 정한다.
	③ -- 기재 생략 -- 1. 3개월 이하 : 해당 근무처의 근무기간은 성과평가에서 제외 2. 3개월 초과 : 이동 전후 평가기간을 안분하여 평가(월할계산)	③ -- 현행과 동일 -- 1. 90일 이하 : 해당 근무처의 근무기간은 성과평가에서 제외 2. 90일 초과 : 이동 전후 평가기간을 안분하여 평가(일할계산)
제23조 개인성과 평가결과 산정방법	-- 신설 --	③평가대상자별 평가자는 당해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서 정하며, 평가자가 평가대상자 그룹별로 부여하는 가감점의 총합은 “0”이 되어야 한다.

④ 조문 정비

- 조직성과평가점수 조정 방법의 명확화 등을 위한 관련 조문 정비
 - 제14-1조 신설, 제7조 3항 및 제15조 삭제, 별표 2-1 신설
 - 별표 1 및 별표 2 개정, 별표 3 및 별표 6 삭제

3 시행일

- 이 기준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